

# 전국규모연맹체 조직 및 운영규정

2023. 1. 18.



제정 2016.10.25  
전면개정 2023.1.18.

##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체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5조(조직)에 근거하여, 협회에 가입한 전국규모연맹체(이하 "연맹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맹체의 명칭은 한국○○체조연맹이라 하고, 그 영문 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연맹체는 체조 종목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전작하는 한편 체조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등)** 연맹의 사무소는 국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연맹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각 연맹체 체조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각 연맹체 체조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각 연맹체 소관 범위 내의 체조대회 개최 및 협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참가
4. 각 연맹체 체조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5. 각 연맹체 체조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6. 각 연맹체 체조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7. 각 연맹체 체조 종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과 종목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홍보
8. 그 밖의 각 연맹체 체조 종목 진흥 및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제2장 조 칙

**제5조(조직)** ① 연맹체는 협회에 가입한 등록단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일반부(실업팀 및 군)의 등록단체로 구성되는 한국실업체조연맹
2. 대학(교)의 등록단체로 구성되는 한국대학체조연맹
3. 중·고등학교의 등록단체로 구성되는 한국중·고등학교 체조연맹
4. 초등학교의 등록단체로 구성되는 한국초등학교체조연맹

② 제1항 1,2호와 3,4호는 통합연맹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가입 및 요건)** ① 연맹체의 가입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협회 정관 및 규정에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한 단체를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연맹체는 최소 8개 이상의 단체(팀)가 등록되어야 한다.

③ 연맹체의 가입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탈퇴)** 협회에 가입한 연맹체의 탈퇴는 탈퇴서 제출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 제3장 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와 의무)** ① 연맹체는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협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협회가 주최 ·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 주관할 수 있는 권리

5. 연맹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협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연맹체는 협회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협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해당 연맹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할 의무

③ 연맹체가 의무를 위반하여 협회 산하연맹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0조에 의거해 제명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을 해태 또는 불이행할 경우 예산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 할 수 있고, 연맹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임 ·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4장 총회

**제9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① 연맹체의 총회는 등록단체(팀)의 장 또는 등록단체(팀)에서 지정하는 사람(소속 지도자 등)으로 대의원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등록단체의 지도자(감독, 코치)중에서 대리인을 추천하여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연맹체의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요사항

④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

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맹체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연맹체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연맹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가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연맹체에 보고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한 때
- ⑥ 총회 소집권자의 권위 또는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맹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및 감사가 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⑧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⑨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제10조(의장)** ① 연맹체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9조 제6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연맹체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연맹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연맹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연맹체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 정관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연맹체의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맹체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연맹체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연맹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연맹체의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연맹체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맹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연맹체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과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9조 제2항에 따른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전까지 연맹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맹체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⑦ 연맹체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 제5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맹체의 이사회는 연맹체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연맹체의 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연맹체의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맹체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연맹체의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맹체의 규정 제정 및 개정
4. 연맹체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맹체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연맹체의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③ 연맹체의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의 소집)** ① 연맹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연맹체의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 · 일시 ·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연맹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 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연맹체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그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연맹체의 이사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연맹체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연맹체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 하거나 또는 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맹체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 제6장 임 원

제19조(임원) 연맹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맹체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2. 부회장 5명 이내
3. 이사 15명이상 23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제20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연맹체는 제28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협회가 직선제 등 선출방식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연맹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회장의 결격사유 및 기탁금 등에 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연맹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선거의 중립성) ① 연맹체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연맹체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연맹체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연맹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연맹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③ 연맹체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협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및 연맹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및 연맹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맹체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맹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연맹체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맹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람이 협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연맹체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출신 대학과 시도를 안배하여 구성하되 협회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2.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행정감사 1인(협회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 15명 이상 23명 이내)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4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연맹체의 임원은 다른 연맹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

할 수 없다.

② 연맹체의 임원이 다른 연맹체의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연맹체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연맹체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연맹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맹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맹체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연맹체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연맹체 이사회, 총회 또는 협회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연맹체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상근 임원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⑥ 연맹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단체(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연맹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단체(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연맹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연맹체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연맹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6조 (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중임(중임 횟수 산정시 다른 연맹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체의 임원은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7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연맹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7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④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체의 임원은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 **8. 협회 이사회가 연맹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연맹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 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 연맹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체는 해당자로부터 연맹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협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9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연맹체의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 ② 제49조 제1항에 따라 연맹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연맹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 ③ 연맹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은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2. 등록단체, 시·도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 제30조(명예직의 위촉)** ① 연맹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및 자문위원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등록단체

- 제31조 (등록단체의 권리와 의무)** ① 등록단체는 연맹체가 개최 및 후원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대의원총회의 파견권과 건의 및 소청권을 가진다.
- ② 등록단체는 연맹체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연맹체에서 결의된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연맹체는 등록단체의 조직 및 운영과 관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장 각종위원회

- 제32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연맹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경기위원회, 기술(심판)위원회, 선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연맹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연맹체의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출신대학과 시도를 적절히 안배하여 구성한다.
- ④ 기술(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경기인(전국대회 3위 입상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⑤ 연맹체는 제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 제38조에 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연맹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체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연맹체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① 연맹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  
되는 재산

② 제1항의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재원)** 연맹체가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등록비, 참가비 등)

**제36조(잉여금의 처리)** 연맹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연맹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연맹체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연맹체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맹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연맹체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및 연맹체의 임직원
2. 연맹체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및 연맹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9조(회계연도)** 연맹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연맹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맹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되 필요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감사 등)** ① 연맹체는 회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맹체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에 따라 연맹체가 별도로 정한다.

## 제10장 사무국

**제42조(사무국)** ① 연맹체는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사무국이 운영되면 회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되 회장의 명을 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연맹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

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⑤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3조(사무국의 운영 등)** 연맹체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녹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나. 외부 인사 3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 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제11장 보 칙

**제44조(해산)** 연맹체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협회의 등록단체 취소로 해산한다.

**제45조(정관변경)** ① 연맹체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0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연맹체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맹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6조(규정 제·개정 등)** ① 연맹체는 협회의 전국규모연맹체 조직 및 운영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연맹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맹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연맹체의 규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협회가 연맹체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연맹체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체조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규정의 해석)** ① 협회의 전국규모연맹체 조직 및 운영규정은 연맹체의 규약에 우선하며, 연맹체 규약을 협회의 전국규모연맹체 조직 및 운영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연맹체의 규약과 협회의 전국규모연맹체 조직 및 운영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협회의 전국규모연맹체 조직 및 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연맹체가 협회의 정관, 전국규모연맹체 조직 및 운영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8조(임원인준 변경요청)** ① 연맹체 임원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장단 및 집행부 임원진의 업무추진력이 현저히 저하하여 집행부 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협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연맹체 임원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변경을 요청받은 연맹체는 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에 대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연맹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맹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3. 기타 체육회 정관 제12조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②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50조(연맹체의 제명)**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맹체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1.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연맹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2. 연맹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협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연맹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연맹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4. 협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연맹체인 경우

② 연맹체가 해산한 경우 협회의 연맹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제한사항)** 연맹체가 협회의 정관 및 전국규모연맹체 조직 및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협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제8조에서 정한 권리 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협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2조(협회의 감사·징계 등)** ①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체육회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연맹체에 대한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에 태만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맹체는 협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 ⑤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체육회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연맹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협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협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요구는 ‘감사규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연맹체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제22조에 의거하여 연맹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부 칙(2009. 9.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9. 9.24).

#### 부 칙(2016. 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연맹체 임원은 제14조(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제8조(회장의 선출)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14조(임원의 임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 ③ 연맹체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한국실업체조연맹, 한국중·고체조연맹, (구)한국에어로빅체조연맹의 임원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부 칙(2023.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